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35
----------	------

2022년 0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의원 18명)
- 나. 발 의 일 : 2022년 1월 19일
- 다. 회 부 일 : 2022년 1월 25일
- 라. 상 정 일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2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인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24조 제18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1. 27. ~ 2. 8)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안 제24조제18항)을 신설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현행과 같음)
<u>〈신설〉</u>	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특별휴가 현황]

휴 가 종 류			휴 가 일 수	규정여부		비고
				복무규정	서울시 조례 (대상추가)	
경조사 휴 가	결혼	본인	5일	0	0	
		자녀	1일	0	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0	
	출산	배우자	10일	0	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0	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0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0	'17.5.18 조례개정 (2일 ⇒ 3일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	0	'17.12.20. 조례개정 (3일 ⇒ 5일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0	0 (그 형제자매 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일	-	0	
여성보건휴가(무급)			매월 1일	0	0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1일 1시간~2시간 최대 24개월, 71개월이하 자녀 양육시	0	0	'17.5.18. 조례개정 (육아시간 여성공무원⇒ 공무원으로 대상확대)
임신검진휴가(유급)			임신기간중 10일	0	0	복무규정 개정
유산·사산휴가	여성공무원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0	0	0	복무규정 개정
	남성공무원	3일				
난임치료 휴가	여성공무원	시술일, 전후 1~4일	0	0	0	복무규정 개정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수업휴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일수	0	0	
재해구호휴가			10일 이내	0	0	복무규정 개정
장기재직특별휴가			재직기간 10~19년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	0	'14.1.9. 조례개정 신설
자녀입영휴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입영당일 1일	-	0	'17.5.18. 조례개정 신설
가족돌봄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유급)		2일(2자녀 이상 3일)	0	0	복무규정 개정
	장애아동·한부모(유급)		상동			
	기타 가족에 대한 돌봄(무급)		10일 이내			
성과우수자휴가			10일 이내	-	0	'21.3.25. 조례개정

특별휴가

○ 2021년 이전에 실시된 선거사무에 협조지원한 공무원들에게 이미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부여해 왔고,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및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2022. 6. 1.)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휴가 또는 공가처리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 부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 협조지원에 필요한 인력(자치구 및 출연기관 1,000명)을 요청하고 있음.

연번	지역명(위원회명)	추천 요청인원(명)	
		시(본청 및 사업소)	투출기관
1	종로구	30	0
2	중구	30	0
3	용산구	30	0
4	성동구	30	0
5	광진구	20	20
6	동대문구	20	20
7	중랑구	20	20
8	성북구	20	20
9	강북구	20	20
10	도봉구	20	20
11	노원구	30	20
12	은평구	20	20
13	서대문구	20	20
14	마포구	20	20
15	양천구	20	20
16	강서구	30	20
17	구로구	20	20
18	금천구	30	0
19	영등포구	20	20
20	동작구	20	20
21	관악구	30	20
22	서초구	20	20
23	강남구	30	20
24	송파구	30	20
25	강동구	20	20
계		600	400

- 다만, 현재 선거사무 협조지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로 한정하는 것이 특별휴가 또는 공가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선거사무 협조지원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부여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공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별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또한, 대통령 선거 및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예 협조지원을 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2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파악되는 바, 조례 개정예 따른 특별휴가 대상자 규모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선거실시에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35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19일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송도호, 송아량, 유정희,
이영실, 장상기, 최정순,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18명)

1. 제안이유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지방동시선거 등 장시간 투·개표사
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인력지원을 한 공무원에게 특
별휴가의 휴게시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피로회복 등을 위해 1일
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안 24조 제18항 신설)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 ⑰ (현행과 같음)
<u>〈신설〉</u>	<p>⑱ <u>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u></p>